

## 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군 산 시 장

발행처 : 공보협력과 (☎454-2083)

###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365호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군산시 조례 제2366호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7
군산시 조례 제2367호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11
군산시 조례 제2368호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군산시 조례 제2369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군산시 조례 제2370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군산시 조례 제2371호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24
군산시 조례 제2372호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군산시 조례 제2373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군산시 조례 제2374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군산시 조례 제2375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군산시 조례 제2376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67
군산시 조례 제2377호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0
군산시 조례 제2378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82
군산시 조례 제2379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군산시 조례 제2380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88
군산시 조례 제2381호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104
군산시 조례 제2382호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2
군산시 조례 제2383호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군산시 조례 제2384호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123
군산시 조례 제2385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7
군산시 조례 제2386호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군산시 조례 제2387호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군산시 조례 제2388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군산시 조례 제2389호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군산시 조례 제2390호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군산시 조례 제2391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회  
람

군산시 조례 제2392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군산시 조례 제2393호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5
군산시 조례 제2394호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군산시 조례 제2395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군산시 조례 제2396호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군산시 조례 제2397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군산시 조례 제2398호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군산시 조례 제2399호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2415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2
--------------------	--	-----

###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5-196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173
군산시 고시 제2025-20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내흥초)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75
군산시 고시 제2025-203호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안)』공청회 개최 공고	177
군산시 고시 제2025-204호	군산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179
군산시 고시 제2025-207호	소룡동1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189
군산시 고시 제2025-20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93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5-2413호	「월명 자율상권구역 지정」공청회 개최 공고	195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65호

###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과 청년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3.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청년창업 육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7.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인구대응담당관, 기금총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전 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 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

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인구대응담당관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산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66호

###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 발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은 각각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군산시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 시의원

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

3. 인공지능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67호

##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산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의 사람

1)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로서 군산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다. 군산시 소속 청원경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재직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군산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경우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참고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결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결·결정·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5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심급마다 공무원 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 등 1명당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 조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는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다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4조의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 사본과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3. 제5조제2항 각 호 관련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공무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착오로 지원한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제9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심급별 지원 금액
2. 소송비용의 환수여부 및 환수 금액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
1. 군산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소송총괄 부서의 장
  3. 인사부서의 장
  4. 감사부서의 장
  5.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8.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10. 변호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68호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을 “다음 각 호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로, “실비”를 “여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
- 2. 역량강화 교육 참석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당 등) 시장은 <u>단원</u>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u>실비</u>를 지급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7조(수당 등) ----- <u>다음 각 호의</u>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 <u>여비</u>----- ----.</p> <p>1. <u>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u></p> <p>2. <u>역량강화 교육 참석</u></p> <p>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69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보건진료소 중 무녀도 보건진료소를 삭제하고, 신시도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신시도, 무녀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u>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u>  <u>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                      (제12조제3항 관련)</p> <p>1. 보 건 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군산시 보건소</td> <td>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td> <td>군산시 일원</td> </tr> </tbody> </table> <p>2. 건강생활지원센터</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td> <td>군산시 설림5길 83 (소룡동)</td> <td>소룡동·미성동 일원</td> </tr> </tbody> </table> <p>3. 보건지소</p>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군산시 설림5길 83 (소룡동)	소룡동·미성동 일원	<p>[별표 1]  <u>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u>  <u>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                      (제12조제3항 관련)</p> <p>1. 보 건 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군산시 보건소</td> <td>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td> <td>군산시 일원</td> </tr> </tbody> </table> <p>2. 건강생활지원센터</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td> <td>군산시 설림5길 83 (소룡동)</td> <td>소룡동·미성동 일원</td> </tr> </tbody> </table> <p>3. 보건지소</p>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군산시 설림5길 83 (소룡동)	소룡동·미성동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군산시 설림5길 83 (소룡동)	소룡동·미성동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군산시 설림5길 83 (소룡동)	소룡동·미성동 일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237	서수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237	서수면 일원
대야면 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대야면 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6	성산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6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4-11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4-11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서면 일원	옥서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서면 일원
4. 보건진료소			4. 보건진료소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금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3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3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347	월암,원화동,석화,신구,마포,하금암,상금암	금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347	월암,원화동,석화,신구,마포,하금암,상금암
대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광길 3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신광	대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광길 3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신광
대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차길 9	대차,소차,경창,함열촌,고산촌,신촌,상리	대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차길 9	대차,소차,경창,함열촌,고산촌,신촌,상리
<del>무녀도 보건진료소</del>	<del>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65</del>	<del>무녀도1,무녀도2</del>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신창안길 42 (산북동)	산북동 24,25,26,27동 (옥성,신창,금성,평화),오식도동 일원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신창안길 42 (산북동)	산북동 24,25,26,27동 (옥성,신창,금성,평화),오식도동 일원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6	비안도,두리도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6	비안도,두리도	상장근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상장근길 16-3	상장근,하장근,원용귀,신중용귀,운원
상장근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상장근길 16-3	상장근,하장근,원용귀,신중용귀,운원	성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50-3	성덕,향동,요동,상흥
성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50-3	성덕,향동,요동,상흥	신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신당길 18	표산,용화,신학당,신당,풍신,풍성,구울,원풍촌,풍촌1구
신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신당길 18	표산,용화,신학당,신당,풍신,풍성,구울,원풍촌,풍촌1구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7-1	신시도, <del>무녀도</del>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7-1	신시도	연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2길 5-2	연도
연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2길 5-2	연도	우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17	신평,원이곡,우포,신기,김제촌,가산,개정
우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17	신평,원이곡,우포,신기,김제촌,가산,개정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985	원나포,옥동,혜곡,신방,원장산,서지,와촌,군둔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985	원나포,옥동,혜곡,신방,원장산,서지,와촌,군둔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하산2길 5	옥삼,월하산,오봉,중야,용연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하산2길 5	옥삼,월하산,오봉,중야,용연	창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2길 6	창오,창안,상작,산곡,대명,우곡,산남,작촌,구작
창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2길 6	창오,창안,상작,산곡,대명,우곡,산남,작촌,구작	술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43	하전,중전,상전,양주,금산,상주,서황,중갈,상갈,하갈
술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43	하전,중전,상전,양주,금산,상주,서황,중갈,상갈,하갈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0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전단 중 “2025”를 “203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11. 10.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 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 ----- 2030----- -----. ----- ----- ----- ----- ----- ----- -----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1호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되는 군산시 본청·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본청·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검진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 외부로 통하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을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실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해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사 소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2호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원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에 소속되어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수사·재판절차 등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전 예방조치)** ①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 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응대 공무원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에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5.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지원
6.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2.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이 설치된 안전 민원실
5.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방안

**제9조(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민원상담(통화·면담)시간을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민원인의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으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

시 분리,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내역 환수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원 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7조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7조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최초 1회에 한함)	1. 병원진료비 등 2.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7조제3호	1일 범위 내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제7조제4호	10일 범위 내	1. 일시적 업무변경 : 부서장 재량 범위 내 ※심적 고통이 계속 될 경우 보직 변경 검토(진단서 및 의 사소견서 등 제출) 2. 휴가 : 공무상병가 6일 이내
법률상담, 형사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지원	제7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상담 연계 및 형사고소·고발 또는 소송 비용 등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7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피해 당사자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 )
민원내용	발생일	
	민원명	
	민원내용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사항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소송 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휴식시간 <input type="checkbox"/>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업(※사업내용 작성 ) ※ 계좌번호: 의료비의 경우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첨부자료	<input type="checkbox"/> 진단서·입원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진료·약제비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부서장 확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군산시장 귀하</b>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3호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군산시”를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군산시”로,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여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제2항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시의회”라한다.)”를 “(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각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제2항 중 “연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있을시”를 “있을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괄 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법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13조제3항제18호”를 “영 제13조제3항제18호”로 한다.

제21조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제24조 중 “같은조”를 “같은 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을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을 “종업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제17조제7항”을 “영 제1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제17조제6항제1호”를 “영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영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학”을 “분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을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41조 중 “처분 하되”를 “처분하되”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의 3 제2항”을 “법 제94조의3 제2항”으로, “시행령 제95조”를 “영 제95조”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등재 관리”를 “등재·관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1년 4회”를 “~ 400만원 이하: 2년 8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초과 :”를 “초과:”로 한다.

1.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4호에서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군산시의 공유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lt;신 설&gt;</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 16조에 따라 <u>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u>심의회</u>”라 한다)를 둔다.</u></p> <p>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공유재산심의회</u>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u>군산시</u>----- <u>기여함</u>-----.</p> <p>제1조의2(<u>다른 조례와의 관계</u>) <u>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u>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u>심의회</u>”라 한다)를 둔다.</u></p> <p>③----- ----- <u>심의회</u>----- -----.</p> <p>1.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p>

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  
산의 취득 · 처분

2.·3. (생 략)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  
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  
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  
장,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한다.) 의원 1명으로 하되, 시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 ⑫ (생 략)

⑬ 심의회의 위원중 군산시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산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생 략)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2.·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1명-----

-----  
--.

③ -----  
-----(이하 “시의회” 라  
한다.) -----

-----  
-.

④ ~ ⑫ (현행과 같음)

⑬ -----  
-----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

⑭ (현행과 같음)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  
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 설>

⑯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들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생략)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같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  
 1회 이상 -----  
 ----- .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 일

-----  
-----  
----- 시의회 -----  
-----

----- . ----- 연도  
중 ----- 있  
을 시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  
-----  
-----  
총괄재산관리관-----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무상사용기간) -----  
----- 법 제21조  
제1항-----

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  
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  
상)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2. (생략)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  
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  
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5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  
치) ①·② (생략)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  
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  
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  
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

-----  
-----  
-----.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  
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  
-----  
-----  
-----  
-----.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사용허가-----  
-----.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 중-----  
-----  
-----  
-----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같은 조 -----  
----- 「외국인투자

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  
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 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  
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  
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의 공유재산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  
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촉진법」-----.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 · 매각 대상 등)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  
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  
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조-----  
-----

5.·6. (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  
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  
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  
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  
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5.·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19조제1항-----  
-----  
-----  
-----  
-----  
-----

4. 시가 -----  
-----  
-----  
-----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

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2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

-----  
-----  
-----

6. 종업원 -----  
-----  
-----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  
-----  
-----  
-----  
-----  
-----

1. -----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  
-----  
-----  
-----

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바. (생략)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등을 75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등을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생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2.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  
 -----

3.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사.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 영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후단신설 2021.05.17.>

1. 영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 6. (생략)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7항 -----  
----- .  
-----  
-----  
-----  
----- .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

2. ~ 6. (현행과 같음)

⑤ -----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 3. (생략)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

과 같음)

④ -----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32조제3항-----.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





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  
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1만제곱미  
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 10. (생략)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  
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  
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  
4조의 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  
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  
을 포함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  
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제외 면  
적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  
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

-----  
-----  
-----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  
조제2호-----  
-----  
-----

7. ~ 10. (현행과 같음)

제41조(처분의 제한) -----  
-----  
----- 처분하되 -----  
-----  
----- .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  
-----  
-----  
-----  
-----  
----- 영  
제95조-----  
----- .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용책임) -----  
-----  
----- 다음 사항-----

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②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제56조(비품의 관리) -----  
-----  
-----  
----- 등재·관리-----.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  
-----.

- 1.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 2. ----- ~ 400만원 이하: 2년 8회 -----

<삭제>

- 3. -----  
초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삭 제>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4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현	행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 2030년 12월 31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5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다”를 “의하며, 해당 시설의 성격과 설치 비용, 유사 시설의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중전의 마목) 중 “초등학생”을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를 “위해”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차.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이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야한다.

제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나. 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성수기</u>”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u>비수기</u>”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p> <p>2. <u>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u></p> <p>가. <u>평일</u>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단, 당일 이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p> <p>나. <u>주말·공휴일</u>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전날 (단, 당일 이용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p> <p>3. ~ 7. (생략)</p>	<p>제2조 (정의) -----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5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p> <p>① ----- ----- -----.</p> <p>1. <u>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u></p> <p>2. <u>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u></p> <p>3. <u>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u></p>

<신 설>

①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4조4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에 의한다.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하며, 해당 시설의 성격과 설치 비용, 유사 시설의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④ (생 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생 략)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  
----- 사용료 -----  
-----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다.-----  
-----  
----- 각 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 사. (생략)

<신설>

<신설>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사.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생 -- 위해 -----

아. · 자. (현행 바목 및 사목과 같음)

차.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삭제>

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이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야한다.

3. -----

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신 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생략)

<신 설>

제16조(보험 가입) ①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② 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①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1]

## 군산시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1동/기준 인원)	사용기준	성수기 (5~10월)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일반캠핑장 (1동/5인)	당일 (09:00~18:00)	26,000	19,000	1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봉투(20L), 분리수거봉투 1매 지급</li> <li>•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li> <li>• 샤워장 이용 포함</li> </ul>
	1일	32,000	26,000	23,000	
오토캠핑장 (1동/5인)	당일 (09:00~18:00)	32,000	26,000	23,000	
	1일	45,000	36,000	30,000	
캐러밴사이트 (1동/6인)	1일	52,000	42,000	36,000	

○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 당일 이용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단, 당일 이용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성수기 : 매년 5월~10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당일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1면의 캠핑사이트에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까지 : 5,000원
  - 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0,000원
  - 다.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5,000원
  -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시설	구분	반환기준		비고
일반 캠핑장 · 오토 캠핑장 · 캐러밴 사이트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8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70% 반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비고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6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체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4.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5.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포함)를 말한다.
9.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10. “숙박시설(업소)”이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등록된 시 소재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1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

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야간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

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군산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문화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스마트관광산업)** ① 시장은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4.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일·휴양연계관광산업)** ① 시장은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연계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6.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연구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의 교류 및 홍보 지원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야간관광사업)** ① 시장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20조(관광사업자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에 기여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국내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및 군산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시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
5. 스탬프투어 완주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축제·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문화·예술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홍보 이벤트

## 2.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 ③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 관광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④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관광 안내원 근무 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대상 업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7호

###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군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군산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군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군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8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체 육 시 설 사 용 시 간 및 휴 무 일(제10조 관련)

구 분	운 영 시 간		휴 무 일
월명종합경기장 실내·외 체육시설	조기	06:00 ~ 09:00	설날·추석 연휴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군산생말파크골프장	동절기 (10~4월)	08:00 ~ 17:00	설날·추석 연휴 매주 화요일
	하절기 (5~9월)	07:00 ~ 18:00	
그 외 실내·외 체육시설	조기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06:00 ~ 22:00		설날·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군산야외수영장	10:00 ~ 18:00		설날·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군산인공암벽장	평일	13:00 ~ 21:00	설날·추석 신정,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토요일 공휴일	10:00 ~ 18:00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평일	06:00 ~ 20:00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
	토요일	06:00 ~ 18:00	
	일요일	09:00 ~ 18:00	
국민체육센터(그 외)	06:00 ~ 22:00		설날·추석 연휴
서군산체육센터	평일	06:00 ~ 20:00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토요일	06:00 ~ 18:00	
	일요일	09:00 ~ 18:00	

- 각 시설의 종료(폐문)시간은 제1항의 마지막 시간을 말한다.
- 실내·외 체육시설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고지 후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3】

## 체 육 시 설 사 용 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표 준 시 간
주 경 기 장	인조잔디구장	체 육 경 기	50,000	75,000	· 2시간 기준
		체 육 이 외	200,000	300,000	· 4시간 기준
월 명 야 구 장		체 육 경 기	80,000	100,000	· 4시간 기준
		체 육 이 외	170,000	230,000	· 4시간 기준
월 명 테 니 스 장 (10코트)		체 육 경 기	100,000	150,000	· 4시간 기준
월 명 실 내 체 육 관		체 육 경 기	90,000	120,000	· 4시간 기준
		체 육 이 외	300,000	450,000	· 8시간 기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15코트)		체 육 경 기	200,000	300,000	· 8시간 기준
월 명 족 구 장 (2코트)		체 육 경 기	10,000	20,000	· 2시간 기준
수송체육공원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
		체 육 이 외	100,000	150,000	· 4시간 기준
생말체육공원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
		체 육 이 외	100,000	150,000	· 4시간 기준
금강체육공원 축 구 장		체 육 경 기	20,000	30,000	· 2시간 기준
		체 육 이 외	100,000	150,000	· 4시간 기준
군산생말파크골프장		체 육 경 기	150,000	200,000	· 8시간 기준

- 표준시간 초과시 제12조제4항에 의해 초과요금을 징수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별표 4】

## 체 육 시 설 이 용 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월명테니스장 (1코트 당)	주 간	1시간	4,000	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야간 (조명시설 이용시)	1시간	7,000		
월명족구장 (1코트 당)	평 일	주간	1시간	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조명시설 이용시)	1시간		5,500
	휴 일	주간	1시간		5,000
		야간 (조명시설 이용시)	1시간		8,000
실내배드민턴장 (1코트 당)	1시간		4,000	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군산생말파크골프장	군산시민	1회 4시간	2,000	1일 1회 입장	
	타지역민		6,000		

-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할인은 이용자 전원일 경우 해당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월명테니스장, 월명족구장 야간 조명시설 이용시간
  - 6, 7, 8월: 19:30 이후
  - 12, 1, 2월: 17:00 이후
- 군산시민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파크골프장의 잔디 등 시설 보호를 위한 휴장기간(동절기, 우천·살수 시 등)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79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기금의 관리) ①·② (생략)</p> <p>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9조(기금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30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0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성)** ① 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연주단원(교향악단, 합창단), 사무국장, 사무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두고 각 단에 지휘자를 둔다.

④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50명 이내의 연주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합창단은 40명 이내의 연주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각 단의 연주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예술감독의 역할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술단의 사무업무

⑤ 지휘자의 유고가 있을 때는 합창단은 수석파트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업무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단원의 유고 시 업무분장에 의해 해당 임무를 부여한다.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채용)**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채용한 단원을 말한다.

④ 단원 채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 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정기평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의2(지휘자의 위촉)**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 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3(사무국장 및 사무단원의 채용)** 사무국장과 사무단원의 채용은 전 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 등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 중 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채용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 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정년 등)** ① 단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의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이면 6 월 30일에, 하반기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상임단원의 근로기간은 정년이 보장하는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거치지 않거나(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단원의 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신질환 및 신체상의 장애 등에 의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7.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8.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복무)**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연주단원 : 10:00 - 16:00(휴게시간 포함)

2. 사무단원 : 09:00 - 18:00(휴게시간 포함)

② 상임단원의 입단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상임단원 및 사무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다.

⑤ 연주단원은 예술단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주단원의 근무시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⑦ 상임단원의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 이석은 누계 5시간을 연가 1일(사무단원의 경우는 8시간)로 공제하며, 결근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⑧ 연주단원의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만 부여한다.

**제8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 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 시 호봉승급제한, 연속 2회 시 감봉, 연속 3회 시 해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기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1호~제5호에 해당되는 단원은 전년도 정기평정 점수를 준용한다.

1. 6개월 이상 휴직 중(공상 포함)인 단원
2. 임신, 법정 출산휴가 및 공상휴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된 자)인 단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애사인 단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정 전까지 지휘자에게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단원
5. 정년이 1년 이하로 남은 단원
6. 평정일 기준 당해연도 입단 단원

④ 연주능력 평정 시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비공개로 선정한다.

⑤ 정기평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악장, 연주단원, 사무단원을 구분하여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이 예술단 활동에서 기량향상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근무평정시 가·감산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가·감점은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평정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정기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단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전형위원)**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 채용 시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 및 사무국별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전형 및 평가 계획·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각 단의 지휘자와 예총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외부 당연직·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단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 및 사무단원의 전형 및 정기평정 계획
3. 단원 및 사무단원의 실제 비용 보상액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1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단원 및 사무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 시의회가 추천한 1명과 예술단이 추천한 1명,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

과장과 감사담당관, 단원이 속한 각 단의 지휘자 또는 사무국장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④ 시의회와 예술단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또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및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기획·합동공연에 연 2회 이상 불참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사람
4.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예술단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6. 예술단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  
뜨린 사람
7. 연(年)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 이석을 한 사람
8. 공연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9. 그 밖의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10.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⑦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법」 제73조의2를 따른다.

**제12조의2(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출연정지·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된 자는 3년 이내에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이 될 수 없다.

⑥ 단장은 내부갈등과 불화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각 예술단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개별 징계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고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조정
2. 출장 승인 취소 및 외부공연 출연 제한
3. 일부 공연 중지

⑦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 비위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후원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순수한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공연)**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기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기획공연은 각 단별 각각 연 6회 이상으로 하고, 합동 공연은 연 4회 이상(각 단별 총 연 10회 이상)으로 하며,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중 정기·기획·합동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정기·기획·합동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별지 제3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

**제16조(실비보상)**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초청출연자나 특별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급여)** ① 상임단원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② 사무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20 . . . ~ 20 . . . ) 군산시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법규를 준수하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전속단체 소관이외의 예술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부 출연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군산시 및 소속 예술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단장 및 지휘자가 요구하는 훈련이나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본 인 소 속 :

주 소 :

성 명 :

군 산 시 시 립 예 술 단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무 료 초 대 권

13cm

군 산 시 립 ○ ○ ○ 단 제 회 연 주 회

번호

초 대 권  
(배 경 : ○ ○ ○ 단 연 주 장 면)

군 산 시 시 립 예 술 단 장

6cm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1호

###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등 지역 돌

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 기반 조직”이란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복지·돌봄·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 기반 조직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전문인력 교육훈련
11.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등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

## 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군산시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제2항의 업무 및 시장이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20조에 따라 “군산시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담당 조직의 계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체 통합운영 시 위원 구성의 특례)** ① 군산시 통합지원협의체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양 협의체 관련 조례에 정하는 기준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에 따른 위원 구성, 임기, 해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및 위촉직의 대표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및 본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2호

###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암3.1로 10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2. 공동육아나눔터
3. 생활문화센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범위 및 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및 범위)** ① 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홀
2. 공동체부엌
3. 주민자율공간

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군산시민을 우선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가족센터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 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군산시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요 금(원)	비 고
다목적홀	1시간	10,000	※ 냉·난방기 사용시 : 별도 5,000원
공동체부엌	1시간	15,000	
마루공간 (연습실)	1시간	3,000	※ 최대 3시간/일 사용가능
방음공간 (동아리실)	1시간		
학습실	1시간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군산시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4조)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3. 사용일 3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 반환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3호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인증서점 도서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선적으로 체결”을 “체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인증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u>우선적으로 체결</u>할 수 있다.</p>	<p>제15조(인증서점 도서 구매) ----- ----- ----- ----- ----- ----- 체결-----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4호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치료 및 건강관리 등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 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체내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거나 혈당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및 혈당 측정용 센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

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제1형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

병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

나. 19세 미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관외 재학 중이면서 관할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 구입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5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1. 시민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

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은 삭제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6호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lt;신 설&gt;</u></p> <p>8. (생략)</p>	<p>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7호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 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u>203</u> <u>0년 12월 31일</u>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8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생략)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2030년 12월 31일</u> ----- ----- ----- ----- ----- -----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89호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u>  <u>31일까지</u>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존속기간)</p> <p>-----</p> <p><u>2030년</u>                      <u>12월</u>                      <u>31일</u></p> <p>-----</p> <p>-----</p> <p>-----</p> <p>-----</p> <p>-----</p> <p>-----</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0호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u>  <u>31일까지</u>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존속기간)  -----  <u>2030년</u>                      <u>12월</u>                      <u>31일</u>  -----  -----  -----  -----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1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p>
<p>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30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2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3호

###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귀촌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육상김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

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양식시설 및 관리선박 보수·교체 지원
2. 김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5. 그 밖의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양식 어업인
2. 김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 7. 김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시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민등록 전출이 없어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환수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사업**(제4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보조사업 항목
1. 김양식 시설 및 관리선박 보수·교체 지원	가. 김 양식시설 및 기자재 구입 지원 나. 김 포자 구입비 지원 다. 김 채취용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라. 김 종자 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 마. 김 활성처리제 지원
2. 김양식 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가. 신규 양식면허지 적합도 조사비 지원 나. 신규 양식면허지 측량수수료 지원 다. 신규 양식면허지 기점 및 경계표식 설치 지원
3. 김가공 시설 건립 지원	가. 냉동보관시설 건립 지원 나. 김 가공공장 설립 지원
4. 김가공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	가. 노후 가공설비 시설개선 지원 나. 가공설비 자동화 지원
5.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지원	가.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운영관련 지원 나. 마른김 가공용수 처리시설 지원 다. 해수, 가공용수 공급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등
6. 푸드테크 육상김 양식사업 추진	가. 육상김 양식단지(시설) 및 R&D 기술개발 지원 나. 육상김 인프라구축 및 투자기업(어업인) 지원
7. 김수출 해외 현대화 지원	가. 수출 통합브랜드 개발 나. 해외 상표권 취득지원 다. 해외시장 개척지원 라. 수출 마케팅·포장재·물류비 지원
8.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가. 수산식품 통합브랜드 개발 지원 나. 수산 가공식품 R&D 개발 지원
9. 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품개발	가. 김 가공식품 신규제품 개발 지원
10. 그 밖에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지원 나. 국내외 특허·상표·인증 취득 지원 다. 소비촉진 및 홍보비 지원 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4호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30년 12월 31일까지</u> 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5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u>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u></p>	<p>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 <u>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6호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법 제1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3. (생략)</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u>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u>위촉위원은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u></p>	<p>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3. <u>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 ----- <u>7명</u> ----- ----- ----- ----- ----- . &lt;후단 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다.</p> <p>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p> <p>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p> <p>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lt;신 설&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 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명만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p> <p>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p> <p>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7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 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30년 12월 31일</u> -----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8호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제16조(특별회계 존속기간) ----- ----- <u>2030년 12월 31일</u> ----- -----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399호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선진 동물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된 행정 동·리에는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비사업
2.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 군산시 공고 제2025-2415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전부개정이유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한정된 조례를 주택 매입까지 포함한 주거자금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기준과 절차 명확화, 환수 관리 근거 신설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현행)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 (개정)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전세자금 중심에서 주택 매입자금까지 확대
  - 용어 정의 신설·명확화

-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4조)
  -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자 포함, 요건 구체화
  - 직계혈족간 거래자 등 지원제외 구체화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 세부계획 수립 의무 신설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6조)
  - 신청서류, 확인사항 등 절차 구체화
- 환수조치(안 제7조)
  - 부정수급·오지급 시 환수 및 관리 규정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7. ~ 12. 7.(21일간)

#### 4. 의견 제출

- 군산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7일까지 군산시장(참조: 주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이메일 등

(우 편) 54069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전 화) 063-454-4242, / (FAX) 063-454-6033

(이메일) dumok22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이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군산시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군산시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4. 부부를 포함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
5.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은 공고 시 균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 부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 서류 등
2. 서약서 및 동의서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 2.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 확인
- 3. 구비서류
-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인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

(서명 또는 인)

신청내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관계임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 20 . . . .)	(서명 또는 인)
2. 주택소유 여부	(매입자금)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전세자금)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은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대계약사항	본인(또는 배우자)은 임대인과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님을 확인함	(서명 또는 인)
5.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자료(주거자금에 한함), 소득상황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밖의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등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25-196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5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5. 11.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신상용전길 37-17	-	20251110	건물 철거	20100125	서수리 신상용전 마을 소재	
2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봉황길 118-9	-	20251110	건물 철거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46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상리길 30	20251110	건물 신축	20100125	복교리 상리 마을 소재	
4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012-6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백석로 246	20251107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90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	20251106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9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22-7 (소룡동)	20251106	건물 신축	20100125	군산공항으로 관통하는 도로	
7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5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9길 14 (미장동)	20251106	건물 신축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5-201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내흥초)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3-144호(2023.9.8.)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내흥초)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나. 명 칭 : 군산내흥초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사업의 면적 : 15,001.6㎡
  - 나. 사업의 규모 : 1동/지하1층~지상4층, 건축면적 6,899.93㎡, 연면적 13,674.29㎡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 나.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3. 9. 8. ~ 2025. 7. 24. / [변경] 2023. 9. 8. ~ 2026.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계	1필지			15,001.6					
1	군산시 내흥동	1063	학	15,001.6	15,001.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군산시 공고 제2025-203호

##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군산시 경관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군 산 시 장

1. 개최목적 :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가. 개최일시 : 2025. 11. 26.(수) 14:00 ~ 15:40
  - 나. 개최장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3층 세미나실(군산시 해망로 146-24)
3.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개요
  - 가. 목표년도 : 2035년
  - 나. 계획범위 :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새만금 지역 제외)
  - 다. 계획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재설정, 기초조사 및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수립, 경관지구 관리 및 운용방안 등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중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안)의 관련 도서를 군산시청 건축경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

은 공청회 장소에 준비된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하시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454-4290 수신  
확인요망)

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063-454-43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5 - 204호

## 군산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37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군 산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군산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외 1필지	65,984.7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4	22~25	집산 도로	213	나운동 831-1 대3-2	나운동 875 중2-72	일반 도로		전북고172 (09.6.5)	
기정	중로	2	12	15~18	보조 간선	1,250	나운동 대로1-2	문화동 대로2-5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중로	2	12	15~21	보조 간선	1,250	나운동 대로1-2	문화동 대로2-5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72	18~21	집산 도로	136	나운동834-8 중로2-12	나운동 875 중로1-74	일반 도로		전북고172 (09.6.5)	
기정	소로	2	859	8	국지 도로	174	나운동835 소로3-122	나운동 835 중로2-85	일반 도로		건고530 (79.12.28)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2	중로2-12	▪ 선형 변경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부출입구 위치 이동 및 도로 선형 변경

#### 나.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43	녹지	경관녹지	나운동 835 일원	1,436.8	감) 39.3	1,397.5	군산-62 (19.6.11)	
변경	144	녹지	경관녹지	나운동 835 일원	1,863.8	증) 41.5	1,905.3	군산-62 (19.6.11)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3	녹지	▪ 경관녹지 경계선 및 면적 변경 - 면적 : 1,436.8→1,397.5㎡ (감 39.3㎡)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부출입구 위치 이동 및 녹지 선형 변경
144	녹지	▪ 경관녹지 경계선 및 면적 변경 - 면적 : 1,863.6→1,905.5㎡ (증 41.5㎡)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부출입구 위치 이동 및 녹지 선형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 $10+(세대수-50)\times 0.05 = 10+(1,531-50)\times 0.05 = 84.05\text{㎡}$	90㎡ 이상
주민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500+세대수\times 2 = 500+1,531\times 2 = 3,562\text{㎡}$	3,800㎡ 이상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단지내 설치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25% 이하	280% 이하	27층 이하

6.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도시경관계획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가로변 외관향상 및 스카이라인 형성과 단지의 중심성 확보를 위해 층고를 다양하게 계획

나. 환경보전계획

계 획 내 용		비 고
지형·지질	▶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감소시키며,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 대상지내 천연연료사용 ▶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 다. 재난방지계획

### 1) 화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 피난·방화대책 계획
  - 아파트 :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 계획
  - 옥상 비상구 : 화재시 감지기 작동, 자동·수동개폐기설치
  - 스프링클러설치 및 자동식 소화기 배치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규제 및 지속적 관리

### 2) 수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용량분석을 통한 적절한 우수수관로 설치
  - 연약지반개선을 위한 공사공법을 시행하여 지반개선
- 자연토양유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
  -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3) 교통

- 단지내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표시, 안내표지판을 신설

- 단지내 곡선부 시거확보를 위해 반사경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 방안			
소음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li> </ul>			
	구 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소음[dB(A)]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진동[dB(V)]	6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li> </ul>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li> <li>-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li> </ul> </li> </ul>			

##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2019.6.11.)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외 1필지	65,984.7	-	65,984.7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5,984.7	-	65,984.7	100.0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부출입구 위치 이동, 도로 및 녹지 선형 변경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A	65,984.7	소계			65,984.7	-	65,984.7	
		1	나운동 835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8,669.5	-	58,669.5	
		2	나운동 835번지	녹 지	3,300.6	증) 2.2	3,302.8	기부채납 (조성후 무상귀속)
		3	나운동 835번지	도 로	4,014.6	감) 2.2	4,012.4	기부채납 (조성후 무상귀속)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A-1	용 도	지정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높 이		27층 이하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자 :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행에 따른 재원은 시공사 선정을 통하여 사업비용 조달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사업지내 건축물은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984.7	27	-	-	철거 : 신축 27 : 17	-	공동주택 : 17개동

※ 부대·복리시설 등은 신축 동수에 산입하지 않음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부출입구 위치 이동, 도로 및 녹지 선형 변경

가. 도로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설치 (무상귀속)	중로1-74	1,492.2	-	1,492.2	중로1-74호선 확폭구간 개설
	중로2-12	1,068.8	감) 7.7	1,061.1	중로2-12호선 확폭구간 개설
	중로2-72	1,092.8	증) 5.5	1,098.3	중로2-72호선 확폭구간 개설
	소로2-859	360.8	-	360.8	소로2-859호선 확폭구간 개설
	소계	4,014.6	감) 2.2	4,012.4	

나. 녹지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설치 (무상귀속)	경관녹지 143	1,436.8	감) 39.3	1,397.5	경관녹지 조성
	경관녹지 144	1,863.8	증) 41.5	1,905.3	경관녹지 조성
	소계	3,300.6	증) 2.2	3,302.8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별도의 건축선계획은 없으며 건축배치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 없음”**

- 본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하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의해 철거 후 신축하게 될 경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위험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

- **변경사유** :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계획세대수 변경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85㎡ 미만	85㎡ 이상
세대수	기 정	800	400	400	1,619	1,571	48
	변 경	-	-	-	감) 148	감) 244	증) 96
	변경후	800	400	400	1,471	1,327	144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결정되는 내용을 따름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 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시설	▪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 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17.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  
음생략

가.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마. 지형도면 고시도

군산시 고시 제 2025-207호

## 소룡동1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변경 (경미한 변경) 고시

군산시 소룡동 일원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소룡동 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군 산 시 장

###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개요

- 계획의 명칭 : 군산시 소룡동1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소리만 들리는 소룡동 소리마을 만들기 -
- 활성화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393-166번지 일원
- 활성화 면적 : 76,975㎡
- 사업비 : 140억원(도비 84, 시비 56)
  - ※ 총사업비 152.4억원(마중물 140, 자체지방비 11.7, 민간 0.7)
- 변경내용 : 총사업비 및 15개 세부사업 중 4개 세부사업 변경

총사업비	당초 152.4 억원 [ 도비 84, 시비 56, 자체지방비 11.7, 민간 0.7 ] 변경 152.6 억원 [ 도비 84, 시비 56, 자체지방비 11.7, 민간 0.9 ]
------	--

## 2. 계획의 목표

<b>+ 비전</b>	<b>소룡동 소리마을 만들기</b>		
<b>+ 목표</b>	안전한 마을	소통의 마을	풍요로운 마을
<b>+ 추진전략</b>	걱정 소리없는 少龍마을 만들기	웃음소리가 들리는 少龍마을 만들기	주민 스스로 꿈을 그려가는 少龍마을 만들기
<b>+ 공간구상</b>	<b>커뮤니티 거점 조성</b>	<b>커뮤니티 연결 도로 조성</b>	<b>저층 노후단독주택지역의 경관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이 좋은 대상지 중앙부에 경로당, 공원, 텃밭 등을 집약하여 효율성 극대화</li> <li>-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간선도로 이면부에 커뮤니티 공간 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외국어 고등학교와 월명중학교를 연결하는 보행축</li> <li>- 커뮤니티시설과 연결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li> <li>-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집수리를 통한 경관개선</li> <li>- 경사지붕에 의한 통일된 경관 형성</li> <li>- 가로와 연접한 주택의 입면, 지붕 형태 등의 통일감 형성</li> </ul>

## 3. 활성화계획도(변경)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변경내용

(단위: 억원, m<sup>2</sup>, %)

구분		최초고시 (①)	당초계획 (②)	변경(안) (③)	증감(비율) (③-②)	누적증감(비율) (③-①)	금번 변경내용 (1줄이내 요약)	
소계	사업비	140	140	140	-	-		
	면적	76,975	76,975	76,975	-	-		
1	H-01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 (자체지방비)	사업비	11.4	11.4	11.4	-	-	(유지)
		면적	555	555	555	-	-	
2	H-02 경관개선사업	사업비	5.84	6.80	7.90	1.1(18%)	2.06(35.2%)	(변경) 사업비, 물량 증 가
		면적						
3	H-0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	2.57	3.02	3.02	-	0.45(17.5%)	(유지)
		면적	425	456	456	-	31(7.3%)	
4	H-04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업비	6.66	6.72	7.72	1(0.1%)	1.06(15.9%)	(변경) 면적증가, 사업비 증 가
		면적	1,078	872	1,132	260(29.8%)	54(5%)	
5	C-01 소용길 만들기	사업비	16.96	21.88	21.88	-	4.92(29.1%)	(유지)
		면적	4,752	4,657	4,657	-	-95(-2.0%)	
6	C-02 마을길 확장사업	사업비	19.64	19.84	19.84	-	0.2(1.0%)	(유지)
		면적	2,695	2,695	2,695	-	-	
7	C-03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사업비	45.41	46.09	43.99	-2.1(4.5%)	-1.11(-2.4%)	(변경) 면적증가, 사업비 축 소
		면적	1,250	1,466	1,492	26(1.7%)	242(19.3%)	
8	C-04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사업비	15.34	10.75	10.75	-	-4.59(-29.9%)	(유지)
		면적	800	605	605	-	65(8.1%)	
9	C-05 실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사업비	9.84	9.58	9.58	-	-0.26(-2.6%)	(유지)
		면적	264	378	378	-	114(43.2%)	
10	C-06 창업점포조성사업	사업비	5.38	5.24	5.24	-	-0.14(-2.6%)	(변경) 위치변경, 부지면적 증가(아울림센터와 통 합)
		면적	260	260	1,492	1,232(473.8%)	1,232(473.8%)	
11	P-01 돌봄전문가 만들기	사업비	0.38	0.38	0.18	-	-0.2(-52.6%)	(유지)
		면적						
12	P-02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업비	4.0	4.0	3.44	-	-0.56(-14.0%)	(유지)
		면적						
13	P-03 도시재생거버넌스 운 영	사업비	2.98	1.98	1.98	-	-1(-33.6%)	(유지)
		면적						
14	P-0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 영	사업비	4.0	3.1	2.38	-	-1.62(-40.5%)	(유지)
		면적						
15	P-05 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업비	1.0	1.74	2.1	-	1.1(110.0%)	(유지)
		면적						

##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억원, m<sup>2</sup>, %)

시설	세부시설	항목	내용	비고
주차장	공영 주차장	위치	-소룡동 1386-6	
		규모	-456m <sup>2</sup> (15대)	
		내용	-공영주차장	
		사업비	-302 백만원	
	어울림센터 주차장	위치	-소룡동 1379-2, 1379-3	
		규모	-205.37m <sup>2</sup> (9대)	
		내용	-공영주차장	
		사업비	-22 백만원	
도로	마을길 확장사업 1구간	위치	-소룡동 1383-45 일원	
		규모	-1,975m <sup>2</sup> , 폭 13m, 연장 120m	
		내용	-도로 확장	
		사업비	-1,306백만원	
	마을길 확장사업 2구간	위치	-소룡동 1519-22외 14필지	
		규모	-720m <sup>2</sup> , 폭(6m→12m), 연장 120m	
		내용	-도로확폭, 보도조성(3m)	
		사업비	-678 백만원 (보상비)	
공원	선형공원	위치	-소룡동 1393-54외 9필지	
		규모	-2,286m <sup>2</sup>	
		내용	-선형공원, 포켓공원 조성	
		사업비	-1,704 백만원	
	소형공원	위치	-소룡동 1393-45외 2필지	
		규모	-222m <sup>2</sup>	
		내용	-조경공사, 태양광 2개소 등	
		사업비	-439 백만원	

## 6.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 7. 기타사항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내용 : 소룡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 (경미한 변경)

○ 열람장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층 도시재생과 (☎063-454-3733)

군산시 고시 제2025-208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5-184호(2025.10.10.)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외 6필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수소과워트레인 시험동 등 증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부지면적 : 176,895.9㎡(변경없음)
  - 나. 건축계획(변경)

구분	건축개요		증감	비고
대지면적	176,895.9㎡ (변경없음)			
	기 정	변 경		
건축면적	7,402.51㎡	7,458.77㎡	증) 56.26㎡	
건 폐 율	4.19%	4.22%	증) 0.03%	
건축연면적	8,890.07㎡	8,946.33㎡	증) 56.26㎡	
용적률산정연면적	8,890.07㎡	8,946.33㎡	증) 56.26㎡	
용 적 률	5.03%	5.06%	증) 0.03%	
주 구 조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물규모	주9동부2동/지상3층	주11동부2동/지상3층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 금회 주10동/1층 교육연구시설(전기실) 연면적 20㎡ 증축
- 금회 주11동/1층 교육연구시설(컴프레샤실) 연면적 36.26㎡ 증축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군산시장(신성장산업과)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고시일 ~ 2026.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지방자치단체 시행)

##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포면 나포리	851	잡	154,109.9	154,109.9	군산시				
2	“	729-4	잡	408	408	군산시				
3	“	312-5	전	2,483	2,483	군산시				
4	“	산16-6	임	5,713	5,713	군산시				
5	“	산18	임	13,003	13,003	군산시				
6	“	산18-1	임	683	683	군산시				
7	“	산253	구	496	496	군산시				
계				176,895.9	176,895.9					

군산시 공고 제2025-2413호

## 월명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군 산 시 장

1. 개최목적: 월명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 12. 2.(화) 16시
  - 장 소 : 군산 근대교육관(군산시 구영6길 22-6)
3. 월명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
  - 사업위치 : 월명동 일원
  - 사업면적 : 약 140,000㎡ 내외
  - 사업기간 : 2027년 ~ 2031년(5년)
  - 계획내용 : 자율상권구역 지정(안) 및 활성화 사업계획 등

#### 4. 의견제출

○ 월명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계획 수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 (sona93@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서식 : 공청회 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 내용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 서식**

월명 자율상권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공청회  
**의견제출서**

의견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 상기와 같이 월명 자율상권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

제출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월명 자율상권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공청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